

영등포구의회
제17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3. 2. 28.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78호로 2013년 2월 1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고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증을 새롭게 제작·발급함으로써 지도
위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소년지도위원증 재질을 인쇄용지에서 PVC 재질로 교체하고
기재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발급일과
위원임기를 추가하여 명시함.(제24조 안 별표 1)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함.
(안 제30조, 안 제45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원증을 새롭게 교체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의 수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기존 종이재질로 사용하던 신분증을 PVC 재질로 교체하고,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발급일과위원의 임기를 추가하여 명시함.(제24조 안 별표 1)
 - 청소년시설 수탁자 선정 근거와 신고포상금 지급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으로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함.(안 제30조, 안 제45조)
-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27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지도위원에게 기존 발급되었던 위원증을 내구성과 편의성 강화를 위해 종이재질에서 PVC 재질로 교체하고,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위원증에 기재되었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정취지에 맞게 생년

월일로 대체하였으며, 발급일과 위원임기를 추가로 명시토록 함으로써 지도위원으로서 사명감과 소속감을 고취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0조와 안 제45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그 밖에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타구 개정 현황 : 대구광역시 중구

관 련 법 령

■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